

2.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907호 1999. 2. 8

개정이유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둔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법 제21조의2).
- 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법 제21조의4).
- 다.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여 제도간소화 및 국민변의 증대를 도모함(법 제21조의7,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0 내지 제21조의13).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조제6항중 “인정될 때에는”을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전에 미리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중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을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나목중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복사 또는 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사시설 또는 편의시설”로 하고, 동호라목중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을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토지의 이용”을 “토지의 이용 및 관리”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9제1항중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7제1항”을 “제21조의3제1항”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을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21조의10 내지 제21조의13을 각각 삭제 한다.

제21조의14제1항중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1조의7제1항”을 “제21조의3제1항”으로, “허가신청이나 신고가”를 “허가신청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나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각각 “허가신청서”로 하 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허가·불허가 또는 신고수리등”을 “허 가 또는 불허가”로 한다.

제21조이15제2항중 “허가신청서나 신고서” 를 “허가신청서”로, “허가신청서 또는 신 고서”는 “허가신청서”로 한다.

제21조의18조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 항중 “제21조의3제2항·제5항 및 제6항 과 제2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21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으로 한다.

③농지로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 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 지역에 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 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호·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제6 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별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